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 양 시



수신 점검 대상 화물운송사업자
(경유)

제목 2022년 하반기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18(2022. 7. 7.)호 및 경기도 물류항만과-7932(2022. 7. 8.)호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명령을 통보하오니 귀 사에 소속된
모든 차량에 대해 아래의 개선 명령에 따른 조치를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유무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6호에
따라 귀 사의 운행기록계 장착 대상 차량에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 주시고, 운행
기록자료를 주기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업로드하여 분석결과를
운전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시어 기기의 정상
작동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호에 따라
귀 사의 전체 차량에 대하여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1항과
제21조 제14호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외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사업자 명칭 표기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에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위반내용에 대해 재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위반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 양 시



주무관

윤석문

교통지도팀장

이경덕

대중교통과장

전결 2022. 12. 21.

신영수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81586

(2022. 12. 21.)

접수

우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관양동) / <http://www.anyang.go.kr>

전화번호 031-8045-5559 팩스번호 031-8045-6552 / 91tjrans@korea.kr / 비공개(6)